

#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 조례(안) 심사보고서

2000. 10. 7  
시민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

## 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정원배 도시개발과장)

#### 가. 개정이유

도시계획법(2000.1.28 법률 제6243호) 및 동법시행령(2000.7.1 대통령령 제16891호)이 전문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자격 등을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,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·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#### 나. 주요 개정골자

- 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2조)
    -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

-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구청장에 대한 자문
-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자격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3조)
  -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
  - 위원장은 구청장,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구의원, 구공무원, 토지이용·교통·환경·방재·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
- 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능별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6조)
-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하도록 규정함.(안 제10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김건재 전문위원)

- 동 조례(안)의 주요골자는 도시계획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기능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마포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구청장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하였음.
-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 중 토지이용·교통·환경·방재·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전체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하였음.
-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5인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음.

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는바 이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4조에 따른 것임.

- 둘 조례(안)은 도시계획법(2000·1·28 법률 제6243호) 및 같은 법시행령(2000·7·1 대통령령 제16891호)이 전문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자격 등을 개정된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마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6조 등에 근거하여 전문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요지(김유현 위원) : 기존 위원회의 인원은 몇 명이었으며 25인 이내면 20명도 가능한지?
- 답변요지(정원배 도시개발과장) : 기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17명 이었으며 20명도 가능함.
- 질의요지(김유현 위원) : 기존 17명에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는 것인지?
- 답변요지(정원배 도시개발과장) : 예. 환경분야가 필요해서 환경분야를 보충하는 것임.
- 질의요지(박상수 위원) : 위임사항이 확대되는 것인지?
- 답변요지(정원배 도시개발과장) : 예.
- 질의요지(박상수 위원) : 회의개최 일수가 늘어나는 것인지?
- 답변요지(정원배 도시개발과장) : 예. 내년에는 한달에 한번정도 개최할 예정임.

○ 질의요지(박상수 위원) :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가능한 25명까지 구성하여 전문성 제고를 충분히 할 것.

5. 토론효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##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(안)

의 안  
번 호

제출년월일 : 2000. 9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도시계획법(2000.1.28 법률 제6243호) 및 동법시행령(2000.7.1 대통령령 제16891호)이 전문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중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자격등을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,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·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### 2. 주요 개정골자

#### 가. 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2조)

- (1)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
- (2)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구청장에 대한 자문

#### 나.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자격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3조)

- (1)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
- (2) 위원장은 구청장,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구의원, 구공무원, 토지이용·교통·환경·방재·정보통신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

#### 다. 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능별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6조)

#### 라.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함.(안 제10조)

### 3. 개정근거

- 가. 도시계획법(2000.1.28 법률 제6243호) 제85조 내지 제87조
- 나. 도시계획법시행령(2000.7.1 대통령령 제16891호) 제80조 내지 제86조
- 다. 도시계획법시행규칙(2000.7.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) 제16조

### 4. 조례안 : 별첨

### 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### 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(2000.8.30 ~ 9.21) 결과 특기할 사항없음
- 나.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0.9.29)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조례는 도시계획법 제85조 내지 제87조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
2.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구청장에 대한 자문

**제3조(구성)**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.

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1.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 의원
  2. 서울특별시마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 공무원
  3. 토지이용 · 교통 · 환경 · 방재 · 정보통신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
- ④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.

제6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한 소위원회와 지구단위계획·재개발계획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기능별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수 있다.

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하며,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소위원회는 5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제1항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심의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구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.

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8조(수당 등)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자료제출의 요구 등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.

제10조(회의의 비공개)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.

제11조(회의록)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